

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	1575
-----------	------

2024년 2월 27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2월 5일, 최유희 의원
2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7일
3. 상정일자 :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
(2024년 2월 27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유희 의원)

-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3년 3월 제정되었음.
- 한편, 2019년 3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교육청이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마련됨.
-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만을

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는바,
「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폐지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최유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575호로 발의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폐지조례안은 2019년 3월부터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제정·시행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」가 별도 조례로서 존속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」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13조에¹⁾ 따라 시도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 수당,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총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한편,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의²⁾ 통합적

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13조(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,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(不作爲)에 대한 소청을 심사·결정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임용권자(시·도의회 의장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)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,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·결정한다.

2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.

1.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

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2019년 3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「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조례」)를 제정·시행하였습니다.

- 동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, 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위원회 위원에게 별도의 지침에 따라 참석 수당이나 공무 여행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³⁾

-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 교육소청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「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조례」 제15조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따라서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오래된 유사·중복 조례를 정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동 폐지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폐지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전문위원실 의견과 동일하게 「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조례」에 근거하여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게 비용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 (행정관리담당관-1917, 2024.2.16.)⁴⁾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2.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

3. 그 밖에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

3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(수당)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이 위원회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」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.

4)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(행정관리담당관-1917, 2024.2.16.) 참조.

VI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